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7 발의연월일: 2021. 2. 16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김태호 · 이철규

정희용・조수진・추경호

김정재 · 김성원 · 이헌승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으며,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면서 두 번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한 보호기간 연장을 보호대상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.

이에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

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). 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	4
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면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	
•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	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
	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
	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
	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3. (현행과 같음)	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